

● 제33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
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: 2527)

2025. 04. 2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번호 2527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영옥 의원 외 1명(찬성 25명)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03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04월 02일

2. 제안이유

- 마약류 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,123명에서 2022년 1만 8,395명, 2023년 27,611명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6,271명(전국 22.7%)으로 경기도(6,678명/24.2%) 다음으로 높음.
-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1.4%로 30대(25.4%)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전체의 36%에 달함.
- 마약류 사범 재범률도 2022년 35%, 2023년 기준 32.8%로 높은 수준임.
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치료 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.
- 이에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에 마약류중독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추가(안 제3조제2항).
- 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항 추가(안 제6조제2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: 2025. 04. 05.~ 2025. 04. 09.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시장에게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</p> <p>①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국회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,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이후에도 재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: 마약류관리법)」을 일부개정(2024. 10. 22.)한 바 있음.
- 개정된 「마약류관리법」 제2조의2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“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”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책임을 신설함.

<p>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25. 2. 7.] [법률 제20507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</p> <p>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/p> <p>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,123명에서 2022년 1만 8,395명으로 약 30.2% 증가하였으며,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.3%로 절도(50.0%)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.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</p> <p>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① ~ ③ <생략>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(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)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0. 22.>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출처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</p>

- 개정안은 위 「마약류관리법」 개정사항을 이 조례 책무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,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.
- 또한,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최근 마약중독 환자 중 일반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, 치료보호·

감호¹⁾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-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역대 최대 인원인 27,611명을 기록함. 이는 지난 2019년 16,044명 대비 1.72배 증가한 수치임²⁾.
- 특히, 마약류 남용이 범죄집단이나 연예인 및 재력가 등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의 문제가 되고 있음. 최근 마약류 중독자들 중 일반인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10~20대 (2019년 23.4%→2023년 35.6%), 여성(2019년 22.3%→2023년 32.3%), 중산층 등의 마약중독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약중독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보편적인 만성질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³⁾.

1) 「마약류관리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르면,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“① 마약류(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)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” 에게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, 법원은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“①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, ②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(害毒)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③ 알코올을 식음(食飲)·섭취·흡입·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” 에게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음.

2) 대검찰청 (2024).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.
<https://www.spo.go.kr/site/spo/ex/board/List.do?cbIdx=1204>

3) 국회입법조사처 (2024).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. NARS 현안분석.
<https://www.spo.go.kr/site/spo/ex/board/List.do?cbIdx=1204>

2.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업무 범위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추가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업무 범위에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<u>지역사회기반</u> 연계 프로그램 등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사후관리체계</u> 구축, <u>지역사회기반</u>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현행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'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'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

는 센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을 통해 추가하려는 업무(사후관리체계 구축)는 센터의 설치·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로 보임.

※ 집행기관 의견(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)

- 소관부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, 특히, 상위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,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므로 ‘원안’ 의견을 제출함.

2 종합의견

-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최근 마약중독 환자 중 일반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시장으로 하여금 치료보호·감호가 종료된 사람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‘책무’를 규정하는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임.
- 또한,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시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센터이므로, 동 센터 업무에 ‘사후관리체계 구축’을 추가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문 의 처

우현재 입법조사관 (02-2180-8155)